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18,073,986	186,542,220
일반회계	5,569,402,869	167,082,086
특별회계	648,671,117	19,460,134
기타특별회계	648,671,117	19,460,134
소방특별회계	254,466,578	7,633,9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0,410,845	9,312,325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1,125,080	333,75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257,450	907,72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883,463	326,504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9,925,551	897,767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602,150	48,06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017,8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